

업무지침

2021년도

약사 면허신고 및 연수교육

2021. 6.



보건복지부

목 차

I. 면허신고	1
1. 개요	2
2. 신고대상 및 신고내용 등	4
3. 일괄신고	7
4. 면허(자격) 미신고시 행정처분	10
5. 면허(자격)신고업무 관련 행정사항	11
II. 연수교육	13
1. 개요	14
2. 약사 연수교육	17
3. 연수교육 비용 산정 및 회계처리	26
4. 연수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28
5. 연수교육 업무 관련 행정사항	29
III. 참고서식	31

제 I 부

면허신고

· I 면허신고

1. 개요

가. 추진 배경

- 약사 자격관리 및 연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약사서비스 향상과 약사 직능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나. 추진 경과

- 약사의 취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 구비 목적으로 면허신고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발의(전혜숙 의원 등, 2019.3.11.)
- 약사법 개정(2020.4.7. 공포, 2021.4.8. 시행)

다. 법적 근거

- 약사법 제7조 및 부칙(법률17208호) 제4조제1항

약사법(2020.4.7. 공포)

제7조(약사·한약사 신고)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명한 경우에는 해당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부칙(법률17208호)

제4조(약사·한약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라. 주요내용

- 약사는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 마다 면허를 신고하여야하며, 연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반려 가능
 - 미신고시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
 - 시행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자는 1년의 경과 기간 내(2021.4.8.~2022.4.7.) 일괄 신고 실시
 - 대한약사회 회장에게 신고수리업무 위탁(마. 참고)

마. 면허신고 수리 업무 관련 위탁

- 약사 면허신고 수리업무 : 대한약사회

약사법

제7조(약사·한약사 신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약사법 시행령

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③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회나 한약사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 취업실태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약사나 한약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2. 신고대상 및 신고내용 등

가. 면허신고 대상 : 모든 약사

-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자 역시 신고 대상임
- 면허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은 아니나, 약사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재교부)받은 자는 신고 대상임

[참고] 약사법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그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

나. 신고주기 및 기간 : 면허 취득, 재발급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 면허취득 연도별 면허신고기간

(1) '21.4.7 이전 면허 취득자 : 일괄신고 실시(p.7 참고)

- 최초 일괄신고 : '21.4.8부터 '22.4.7까지
- 일괄신고 이후의 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 까지 재신고

면허발급 연도	최초 신고 연도	차기 신고 연도	
'21.4.7 이전	'21.4.8 ~ '22.4.7 (일괄신고 기간)	'21.4.8 ~ 12.31 신고자	'24.1.1 ~ 12.31
		'22.1.1 ~ 4.7 신고자	'25.1.1 ~ 12.31

- '21.4.7 이전 면허 취득자가 일괄신고 기간 이후 최초 신고하는 경우, '20년도부터 신고년도의 직전년도까지의 취업상황, 실태 등 신고

※ (예) '15년도 면허 취득자가 일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25년도에 최초로 신고한다면,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의 취업상황 등 신고

(2) '21.4.8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 :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그룹명	면허 발급 연도	최초 신고 연도	차기 신고 연도
3A	2021.4.8~2021.12.31	2024	2027
3B	2022.1.1~2022.12.31	2025	2028
3C	2023.1.1~2023.12.31	2026	2029
3D	2024.1.1~2024.12.31	2027	2030
산식	X	(X+3)	(X+6)

* 면허를 '24.4.1에 취득한 자는 3년 후인 '27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신고

(3) 면허취소 후 면허 재교부자

- 면허취소자는 면허 신고 대상이 아니나,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는 해당 업무 복귀 전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함
- 면허 재교부자는 재교부일(재교부된 면허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적용
 - 면허를 재발급받은 해(면허증의 재발급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신고
- ※ (예) '14.2.10에 면허를 취득한 약사가 '21년 면허신고 이전인 '16.8.15.에 면허 취소되어 '22.5.10에 재교부받았다면, 취소기간인 '16, '17, '18, '19, '20, '21년은 신고 면제, '15년 취업상황, 실태 등을 신고한 후 해당업무 복귀, 면허 재발급받은 해('22년)와 그로부터 매 3년이 되는 '25년에 면허신고
- ※ 절차 : 면허취소 → 면허재발급 → 면허신고 → 업무 복귀
- * 본인의 면허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lic.mohw.go.kr)

(4)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

-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도 면허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 면허자격정지처분 기간은 조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으로 산정하여 연수교육 이수 여부 판단 필요
 - 해당연도에 면허자격정지처분으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연수교육 면제
- ※ (예1) '18.1월-'19.8월까지 약국에서 면허범위 내 업무에 종사, '19.9월-'20.8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20년도 연수교육 면제 판정 후 '21년 면허신고
- ※ (예2) '18.1월-'20.8월까지 약국에서 면허범위 내 업무에 종사, '20.9월-'21.8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20년도 연수교육 이수하고 '21년 면허신고
- ※ 절차 : 면허자격정지처분 → 자격정지처분 기간이 경과하고 면허신고 완료 후 업무 종사

다. 신고내용 : 취업 상황 실태 등

- (신고내용) 취업 상황 실태* 등 ⇨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제출(p.6 방법1, 방법2 활용)

*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연수교육 이수여부 등

- (첨부서류) 직전 연도 연수교육 이수증 또는 면제 확인서

라. 신고방법 및 절차

- (1) 약사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의 「면허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실태 등 신고서” 작성(방법1) → 대한약사회 회장에게 제출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부 또는 분회에 직접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면 지부 또는 분회가 대신 입력 가능(방법2)

【첨부서류】 연수교육이수증 또는 연수교육 면제 확인서(별지서식)

※ 대한약사회비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신고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신고 가능 (약사 면허신고하더라도 대한약사회 회원 가입을 강제할 수 없음)

- (2) 대한약사회장은 신고인이 신고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후 신고 ‘수리’ 또는 ‘반려’ 결정 통지 (약사법 제7조제2항)

【신고요건】 연간 6시간(8평점) 이상 연수교육 이수(p.15 참조)

- 다만,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연수교육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약사회장에게 연수교육 면제 신청하여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함

→ 연수교육 면제 신청자는 ‘면허신고시스템’에서 최종 면제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 대한약사회는 교육 이수자 및 면제자에게 연수교육 이수증 및 면제 확인서를 면허신고시스템 상에서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발급해야 함
- 단, 불가피한 경우 Fax 등 유선으로 확인서를 송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원본을 송달해야 함

※ 이수증 및 확인서 발급에 별도 수수료는 없으나, 우편 송달 비용은 개인 부담

3 일괄신고

가. 일괄신고 대상 : 2021.4.7 이전 면허를 취득한 약사(면허발급일 기준)

나. 일괄신고 내용

- (신고내용) 취업 상황 실태 등 ⇨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제출(p.6 방법1, 방법2 활용)
- (첨부서류) 2020년도 연수교육 이수증 또는 면제 확인서
 - 2020년도 연수교육 이수와 관련된 사항은 개정 이전의 약사법 적용이 원칙이고, 따라서 일괄신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2020년도 연수교육 이수증'임(또는 면제 확인서)

약사법 시행규칙(2020년도 기준)

- 제5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① 법 제15조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은 매년 6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② 영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는 매년 연수교육의 대상 및 교육 내용 등을 포함한 연수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연수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2020년도에 연수 교육을 미이수 한 자는 2020년도 보충교육 미이수 시간(평점)을 이수한 후, '2020년도 보충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신고 가능. 다만, 이 경우에도 다음 신고시에 필요한 2021년도 연수교육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 만약 2020년도 당시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 증명 서류를 대한약사회에 제출하면(지부 경우 가능) 대한약사회가 확인 후 면제 처리

< 일괄신고 시 2020년도 연수교육 이수·면제·미이수에 따른 처리 기준 >

구분		2020년도 연수교육 관련 첨부 서류	대한약사회의 신고 수리 기준
2020년도 연수교육 이수자		2020년도 연수교육 이수증	면허신고시스템 자동 확인
2020년도 연수교육 면제자	2020년에 면제 관련 서류 제출자	없음	면허신고시스템 자동 확인
	2020년에 면제 관련 서류 미제출자	2020년 연수교육 면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대한약사회 서류 확인
2020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	2020년도 보충교육 이수자	2020년도 보충교육 이수증	면허신고시스템 자동 확인

※ 연수교육 이수 현황 및 면제 확인은 「면허신고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가능하며, 자동 확인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다. 일괄신고 기한 : 2021.4.8. ~ 2022.4.7.(1년간)

라. 유의사항

- 일괄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일괄신고기한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 진행
 - *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
→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부터 면허 효력 정지
- 미신고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는 곧바로 신고를 실시한 때부터 면허 효력을 되살릴 수 있음(면허 취소가 아님)

- 일괄신고 대상자가 일괄신고 기한이 지나서 추가로 최초 신고하는 경우, 2020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 3년의 연수교육 이수증 또는 연수교육 면제 확인서 제출
- * (예시) 2002년도 면허 발급자가 일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2024년도에 최초로 신고할 때,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연수교육 이수증 또는 면제 확인서 필요

4 면허(자격) 미신고시 행정처분

가. 미신고시 행정처분 : 면허의 “효력정지”

-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약사법 제79조 제4항 및 부칙 법률 17208호 제4조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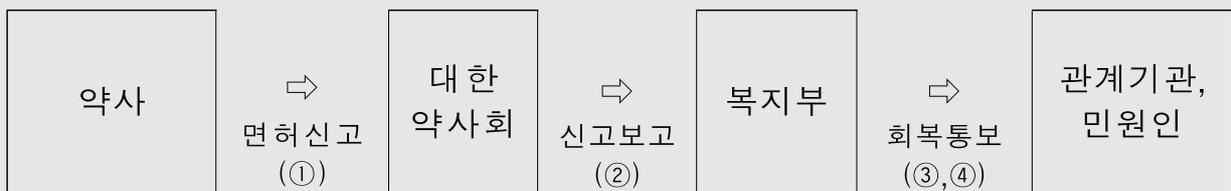
약사법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 후 효력회복 : 신고 “즉시”

-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 효력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하여 적용됨)

✓ 면허효력 회복 절차



I. (약사회)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약사가 면허신고를 한 경우에는(1)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2)(약사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II. (복지부) 대한약사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에 효력 회복 통보(3)

* 대한약사회는 민원인에게 최종 면허 효력회복 통보(4)

※ 복지부는 면허 미신고자에게 효력정지 처분 통보 시 상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내용 안내

5 면허신고업무 관련 행정사항

가. 면허신고 결과 보고

- 면허신고업무 수탁기관은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약사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 (대한약사회장)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연수교육 이수여부 등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서(별지 제4호의2 서식)” 내용을 엑셀자료로 저장(반드시 비밀번호 설정)하여 제출

나. 인터넷 기반의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

- 대한약사회는 홈페이지에 일체의 회원가입 또는 등록과정 없이 본인 확인*만으로 면허 신고가 가능하도록 구축 (필요시 대한약사회 시스템 상 면허번호와 신청인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 * 공인인증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 확인시스템 활용 등
 - ※ 면허 신고를 하기 위해 반드시 대한약사회에 회원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
- 대한약사회는 연수교육 이수 여부 또는 면제 여부를 신고 의무자가 항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면허 신고 시 자신의 연수교육 이수 여부 또는 면제 여부, 보충 연수교육 이수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동하여 설계
 - *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연수교육 이수증 또는 연수교육 면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시스템 구축
-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신고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작성한 신고 내용에 대한 중간 저장(신고의 의미가 아님)이 가능하도록 구축
- 신고 수리 시에는 약사가 신고 수리 확인증을 인쇄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수리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 통보

- 신고를 마칠 때, 해당 약사의 다음 면허 신고 시점을 안내할 것

다. 회비 납부여부에 따른 면허신고수리 거부 절대 금지

- 면허신고는 약사법 제7조제1항 및 부칙 법률17208호 제4조제1항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 신고요건(연수교육 이수 등)을 충족하지 않아 반려하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참고 : 행정처분 절차】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또는 처분일)부터 면허 효력 정지

제Ⅱ부

연 수 교 육

·Ⅱ 연수교육

1 개 요

가. 추진 목적

- 약사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대국민 약사서비스 발전에 기여토록 함

나. 추진 경과

- 1975.12.31 : 약사 보수교육 실시근거 마련
- 1976.09.27 : 약사법 시행령 개정
 - 약사회에 보수교육 업무 위촉
- 1976.11.11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 약사 보수교육 시간 : 15시간 이상
- 1991.12.31 : 약사법 개정
 - 명칭 변경 : 보수교육 → 연수교육
- 1992.07.01 : 연수교육 미이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약사법 개정·시행 1993.01.01)
- 1994.07.07. : 과태료 금액 산정기준(약사법 시행령 개정·시행)
 - 약사 : 50만원
- 1994.07.18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 약사 연수교육 시간 : 15시간 이상 → 8시간 이상

- 2000.06.16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 약사 연수교육 시간 : 8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2001년도 약사연수교육계획 승인
 - 교육대상자 확대, 약국 관리약사 및 약국 근무약사 추가
- 2002.1.12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 약사 연수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 : 자격정지 3일
 - 3차 위반 : 자격정지 7일
 - 4차 위반 : 자격정지 15일
- 2005년도 약사연수교육계획 승인
 - 교육대상자 확대, 의료기관 근무약사 추가
- 2006년도 약사연수교육계획 승인
 - 교육대상자 확대, 제약회사 및 유통업체 관리약사 추가
- 2016.12.13 : 면허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약사법 시행령)
 - 1차 위반 : 50만원, 2차 위반 : 75만원, 3차 위반 : 100만원*
- 2020.04.07 : 약사법 개정으로 면허신고제 도입(2021.4.8시행)
 - 연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반력, 면허 미신고시 효력정지처분 (면허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다. 법적 근거

- 약사법 제15조제1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

약사법

제15조(연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및 한약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 연수교육 업무 주관

- (1) 약사의 연수교육 주관기관 : 대한약사회(업무 위탁자)

약사법 시행령

제35조(업무의 위임·위탁)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회나 한약사회에 다음의 업무를 위탁한다.

2. 법 제15조에 따른 약사나 한약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2, 약사 연수교육

가. 연수교육 대상 : 모든 약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음(약사법 제15조제1항)
 - 다만,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연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음
-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은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으로 산정하여 연수교육 대상 여부 판단
 - 만약 해당 년도에 자격정지 처분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6개월 이상 조제·판매 등 의약품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우라면 교육 대상임
- 면허 취소된 자는 면허자의 신분이 상실된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소기간 동안에는 연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나,
 - 약사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 받으면, 면허증 재교부 일로부터 다시 연수교육 이수 의무 발생

나. 연수교육 면제제도

(1) 관련 근거 법령 :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면제) ①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람

2. 군 복무 중인 사람
 3. 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
 4. 대학원 재학생
 5. 해외체류·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6. 법 제3조 및 법 제4조에 따라 신규로 면허를 받은 사람(면허를 받은 연도 및 다음 연도만 해당한다)
 7.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약사·한약사 연수교육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신청인이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약사·한약사 연수교육 면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연수교육 면제 대상

- (제1호) 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람
 - 행정기관, 보건소, 연구소, 기업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 의약품 제조·수출입·유통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의약품 제조·품질·안전·도매관리 업무(약사의 면허범위 내 관리약사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 (예시)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약사 면허를 소지한 공직자, ○○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약사 면허를 소지한 마케팅 담당자

○ (제2호) 군 복무 중인 사람

- 현재 군에 의무 복무중인 사병(사회대체복무자 포함) 및 부사관 이상의 군인

→ (예시) 국군 수도병원에 복무중인 약사면허를 소지한 병장 홍길동

○ (제3호) 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

→ (예시) ○○약학대학 교수, 강사 등

○ (제4호) 대학원 재학생

- 대학원 재학생으로 연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 (예시) 약사 양성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 다만, 약사가 조제·판매 업무에 종사하면서 해당 면허 외의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해당 면허에 대한 심화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수교육 면제 불인정

* (예시) 약사가 파트타임으로 약국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면서 경영전문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연수교육 면제 불인정

○ (제5호) 해외체류·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의약품 조제·판매·제조·품질·안전·도매 관리 업무(약사의 면허범위 내 관리약사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 (예시) 휴·폐업, 휴직자, 퇴직자, 해외체류자, 관리약사 업무 외 보직으로 변경된 자 등

○ (제6호) 법 제3조 및 법 제4조에 따라 신규로 면허를 받은 사람 (면허를 받은 연도 및 다음 연도만 해당한다)

- 면허를 신규로 취득한지 2년 이내의 자(면허 재교부 받은 자 제외)

○ (제7호)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예시)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질병 등으로 당해연도 연수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

✓ 연수교육 면제여부 유권해석례

■ 면허범위 내 조제·판매 업무에 종사하거나 의약품 관련 업체에 관리약사로 근무하면서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에 주·야간 구분없이 1학기 이상 수료한 경우, 당해 연도 연수교육은 면제

■ 논문지도학기 과정*중인 자는 정규과정에 포함되어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이 되는 경우, 당해 연도 연수교육은 면제

■ 면제 대상자의 신분이 당해연도의 6개월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 당해연도 연수교육은 면제되지 않음

(예) 군대에서 일반사병(사회대체복무도 포함)으로 '20.8월 입대 후 '22.1월 제대한 경우, '20년 연수교육 대상, '21년 연수교육 면제, '22년 연수교육 대상

■ 면제사유가 변경되더라도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산 가능하며, 면허 신고 시 연수교육 면제 대상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예) 1월과 2월에 군대 일반사병의 신분이었으나, 3월부터 8월까지 대학원 재학생 신분이라면 연수교육 면제)

■ 6개월 미만 여부는 근무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

(예) '20.3.17~'20.9.16 : 6개월 미만

'20.2.2~'20.8.2 : 6개월 이상

'20.4.2~'20.10.3 : 6개월 이상

'20.1.1~'20.3.25, '20.6.5~'20.9.10 : 6개월 이상

※ 비상근근무자(주 1일~3일 근무 등)는 실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해당 연도 최초 근무일부터 최종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21.1.1.(최초근무일)~'21.7.2.일(최종근무일)까지 주 1일 근무자의 경우는 6개월 이상 근무)

■ 출산·육아 휴직 연도의 연수교육과 업무 복귀 시 복귀한 연도의 연수교육은 휴직 및 복귀 시점에 따라 결정

(예1) '20.6.1일 출산 후 '20.9.1일 복직한 경우는 '20년도 연수교육 대상

(예2) '20.10.1일 출산 후 출산휴가('20.10.1~'21.12.30) 및 육아휴직('21.1.1~'21.12.30)하고 '21.12.21에 복직 한 경우, '20년도 교육 대상, '21년도 면제

(예3) '20.5.1일 출산 후 퇴사하고 이후 다른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 '20년도 연수교육 면제

(예4) '20.3.10일 출산 후 퇴사하고 다른 요양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수출입·유통업체에 취업하여 합산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수교육 대상

(예5) '20.12.1일 출산 후 2년 육아휴직('21.3.1~'23.2.28), '23.3.1에 복직을 한 경우, '20년도 교육 대상 '21년도와 22년도 면제, '23년도 교육 대상

- 의약품 제조·수출입·유통 업체 관리약사의 경우 보직을 유지하는 기간만 산정

(예) '20.1.1~20.6.29까지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20.7.1일 인사 이동으로 연구소로 발령난 경우 '20년도 교육 면제

(3) 보건복지부장관의 연수교육 면제 인정 절차

- 약사가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연수교육 면제 신청서(별지 제4호의3 서식)” 작성 → 대한약사회장에게 제출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2항)

【첨부서류】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면제 (제1항)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1호)	⇒ 휴직자 :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 퇴직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일반·행정기관/의료기관 소속자로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재직증명서
	군 복무 종인자(2호)	⇒ 병적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현역복무 확인서
	학교에 재직 중인 자(3호)	⇒ 교수 및 연구원 : 재직증명서(비고란에 직위/직책 명시)
	약학대학 대학원 재학생(4호)	⇒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휴업, 폐업, 해외체류 및 보직변경 등으로 6개월 이상 의약품 조제·판매·관리 업무 미종사자(5호)	⇒ 해외체류 : 출입국사실확인서 ⇒ 휴·폐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휴·폐업 사실 증명원 ⇒ 업무 변경 : 재직증명서(비고란에 관리약사 아님을 명시)
	신규 면허취득자(6호)	⇒ 면허증 사본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7호)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약국, 의료기관의 폐업·이전 등으로 사실증명이 곤란한 경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기 근무이력 조회 결과 사본

※ 2020년도 연수교육 면제처리 완료자에 대해서는 2021년도 면허 일괄 신고 시 연수교육 면제 증명서류 제출 면제. 다만, 2021년도 면허 일괄 신고 시행 시까지 2020년도 연수교육 면제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면제 대상자는 연수교육 면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연수교육 면제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면제 신청을 해야 함

○ 연수교육 면제 신청인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약사회장 → 신청인에게 “연수교육 면제 확인서(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조의4 서식)” 교부*

* 연수교육 이수 현황 및 면제 여부는 「면허신고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처리기간) 5일

-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른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회신된 문서를 근거로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 분류

※ 유권해석에 연관된 소속 약사에게도 면제가 가능한 사유를 유권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안내 및 추가 신청 시 면제 인정 집행

다. 연수교육 시간

(1) 연간 연수교육 이수 시간 : 6시간 이상(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전년도에 연수교육을 일부 시간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연수교육 시간과 당해 연도 연수교육을 더한 시간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예시1) 2020년에 4시간 이수자의 2021년도 이수해야 할 연수교육 시간 : 8시간이상(= 2020년 잔여 연수교육 4시간 + 2021년 당해 연도 연수교육 6시간 이상)

* (예시2) 2021년도 최초 일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2023년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연수교육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연도별 면제확인서 및 미이수 교육시간을 합산한 총 미이수 시간에 대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전년도의 미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또는 다음 연도에 추가로 이수하는 가능하나, 당해 연도에 초과하여 이수한 연수교육 시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음

* (예시) 2020년에 10시간 이수 한 사람의 2021년도 이수해야 할 연수교육 시간 : 6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평가에 따른 인정시간 부여

○ 2020년도 연수교육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254호(2020.1.17.)로 승인된 대한약사회 연수교육계획서에 의해 6시간 이상(8평점)으로 운영됨

○ 연수교육을 1시간 받은 경우 1평점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한약사회가 교육 내용을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인정시간을 달리 부여할 수 있음

- 평가 기준은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 신청 시, 해당 교육의 인정시간을 확인한 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 실시 전에 미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함

※ 평가 기준에 따른 인정시간 차등 부여는 민원의 소지가 많으므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인정시간 1평점 기준이 실제교육시간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며, 교육대상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및 공지 필요

라. 연수교육 내용

(1) 필수적 성격의 교과목

-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이 연수교육에 포함되도록 교육계획에 반영
- 윤리, 약사법령, 복약지도 교과목을 매년 2평점 이상 필수 이수

【협조사항】

- 약사법령 주요 위반사례, 의약품 부작용사례, 복약지도 실무지침 등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자체 교육프로그램 마련
- 연간 연수교육계획 수립 시 대한약사회에서 윤리, 약사법령 관련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교과목을 연수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진행

(2) 타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아동복지법 제26조)
-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령, 폭력 및 성희롱 관련 법령 등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한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16.11월,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 전국민 대상 게이트키퍼 교육으로 빈틈없는 인적발굴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18.1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발표)
- 노인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예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4항)

(3) 연수교육 강의평가 및 신규강의 개발

- 대한약사회는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평가를 의무화 하여 일정수준 이하 평가를 받은 교육은 폐지
- 기술 발달 및 변화된 보건의료환경에 부합하도록 매년 일정 수 이상의 온·오프라인 강의를 신설

마. 연수교육 실시기관

- 원칙적으로 연수교육은 대한약사회가 실시하여야 하나, 연수교육 계획에 포함된 대한약사회가 승인한 직역별 교육기관 등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실시 가능
 - (예시) 병원근무약사 : 한국병원약사회
- 대한약사회장은 약사가 다른 법률에 따른 연수교육 이수 시 해당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수교육 시간(평점)으로 인정 가능
 - (예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KGSP교육 이수 시 4평점 인정, 한국 동물약품협회 동물용의약품 KGSP교육 이수 시 4평점 인정, 한국 제약바이오협회 제조·수입 관리자 교육 이수 시 4평점 인정, 대한약사회 의약품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시 4평점 인정
- 연수교육 실시기관별 상한시간 지정 시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 하에 시행 가능
- 만약 대학 등 타 교육기관에 위탁 실시하는 경우, 내부 심의를 통해 연수교육 내용, 이수시간 대비 인정 평점, 교육비용 산정 등이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
 - 교육이 부적절하게 시행되거나 연수교육계획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은 연수교육기관 지정 취소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

3 연수교육 비용 산정 및 회계처리

가. 연수교육 비용 :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간접비+직접비)

- 연수교육 직접비는 “대한약사회비 납부회원과 미납(비)회원 간에 동일*하게 부과”하되, 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납(비)회원에게 추가로 부과 가능
- 다만, 대한약사회비 납부 회원에게 연수교육 직접비를 할인하는 방식 등을 포함하여 직접비를 차등을 두는 것은 불가

✓ 연수교육 직접비 산출

- 각 교육별로 강사료, 교재비, 교육장소 임차료 등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총 교육대상자수(회원+비회원)로 나누어 1인당 비용을 산정

✓ 연수교육 간접비 산출

- 연수교육 부서 운영비, 연수교육 상근담당자 인건비 등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총 교육대상자수(회원+비회원)로 나누어 1인당 비용을 산정

* 미납(비)회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간접비는 연수교육 관련 인건비·운영비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대 서비스 및 그로 인한 운영비 등이 포함된 대한약사회비 보다 많게 산정하여 부과할 수 없음
(1시간당 간접비 * 8평점(시간) ≤ 대한약사회비)

- 연수교육 상근담당자 인건비는 교육준비 및 시행기간 중 투입된 상근 인력의 참여도에 따라 산정하되, 아래의 기준 범위 내에서 산정

구분	참여율
전담 인력	월 급여 * 100% 이내
보조 인력	월 급여 * 30% 이내
기획, 회계 담당 등	월 급여 * 20% 이내

- 연수교육 신청 후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경우 등 연수교육비 환불조건 및 환불기준 관련 규정 마련
- 이 경우 연수교육 실시 전과 실시 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간접비는 100% 환불

나. 회계처리

- 연수교육 관련 예산(수입, 지출)은 대한약사회비 및 일반운영비 등과 별도 회계로 구분하여 엄격히 관리
 - 연수교육 회계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익년도 연수교육 수입으로 계상하여 비용 산출하거나 연수교육 관련 사항으로만 지출
 - 연수교육 관련 예산(수입, 지출)은 별도의 계좌*로 사용
- *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의 계좌

다. 기타 수수료 관련

- 연수교육 면제 신청 및 확인서 발급 시 별도 수수료 부과 금지

4 연수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경고 ~ 자격정지 15일(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II.개별기준 40.)
 -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 : 자격정지 3일
 - 3차 위반 : 자격정지 7일
 - 4차 위반 : 자격정지 15일
- (가중처분 기준)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정처분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다시 II. 개별기준의 같은 호 또는 같은 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5 연수교육 업무 관련 행정사항

가. 연수교육 계획 및 실적 보고

(1) 연수교육 계획

- 대한약사회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연도의 연수교육 실시 기관,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집합·사이버 등), 교육 예산 및 피교육자 경비 부담액 등이 포함된 '연수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이 경우 연중 연수교육계획은 대한약사회 연수교육 홈페이지에 별도 메뉴로 구성하여 약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중 게시

(2) 연수교육 실적 보고

- 대한약사회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연수교육 이수자 수, 당초 제출한 계획 대비 변경사항 등 전년도 연수교육 운영 결과에 관한 '연수교육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소속 약사의 연수교육 이수 결과는 「면허신고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하여 관리

나. 연수교육 이수증 등 각종 서식 발급

- 대한약사회장은 해당 약사의 연수교육 이수증, 면제 확인서 발급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제5조의2제3항)
- 약사는 면허 신고 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연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수교육 이수증 발급도 가능하도록 구축 (※ 대한약사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할 수 없음)

-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연수교육 이수증은 전년도까지의 연수교육 이수 결과로 함
- 신고 수리 시 대한약사회장은 해당 약사의 최근 신고년도*부터 당해연도를 제외한 직전 연도까지의 연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 * 2021년에 최초신고하고 2024년에 신고할 경우, 2021년, 2022년, 2023년의 연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참고로, 보충교육 이수도 인정)

다. 연수교육 관계서류 보존

-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대한약사회 등은 연수교육 관계서류(전자문서 포함)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관계서류】

1. 연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 명시)
2. 연수교육 면제자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연수교육 운영관리 강화

- (출결관리 강화) 신분증 본인대조 확인, 서명기입 의무화하고,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 확대
- (평가 강화) 대한약사회 내 ‘연수교육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연수교육 실시기관, 운영현황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마. 대한약사회 각종 규정 개정

- 대한약사회 각종 규정이(정관시행 세칙, 연수교육규정, 윤리위원회규정 등) 개정된 약사법령 등(업무지침 포함)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

바. 기타 협조 요청 사항

- 연수교육 및 면허 신고 시 대한약사회비 납부를 유도·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대한약사회는 지부·분회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연수교육 비용(직접비)을 등록 회원 및 비등록 회원과 차등하여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어떠한 경우(대한약사회비 미납 포함)에도 연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

✔ 주요 부당 운영 사례

- 온·오프라인 연수교육 이수 및 연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협회 회원 여부, 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하는 방식
- 개설자와 근무자에 대한 연수교육 비용 차등 부과
- 연수교육 면제 신청 시 회원 여부에 따라 별도 비용 부과
- 타 지부 연수교육 수강 희망 시 별도의 비용이나 절차를 요구 행위
- 연수교육 실시기관별 상한시간 지정
(단, 연수교육 실시기관별 상한시간 지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 하에 시행 가능)

- 연수교육 관련 민원 발생 방지대책 수립·운영
 - 회원·비회원 간 과도한 교육비 차별, 대한약사회 가입과 연수교육 연계, 출결관리 및 연수교육의 질 관리 등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
- 문의사항 안내 관련
 - 소속 약사의 면허 신고 및 연수교육 이수 관련 문의를 전담할 수 있는 대한약사회 내 직통 콜센터 운영하되 면허신고제 관련 안내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도 함께 안내
 - * 각종 홍보물에 대한약사회 콜센터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번호 함께 안내
 - 향후 자주 묻는 질문은 정리하여 홈페이지 등에 FAQ로 게시

제III부

참고 서식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신고인	성명	면허번호
	직종 [] 약사 [] 한약사	
	면허발급 연월일	전자우편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취업상황	활동 여부	[] 약국 근무([] 상근, [] 비상근) [] 의료기관 근무([] 상근, [] 비상근) [] 그 밖의 기관 근무 [] 미활동
	약국 근무자	근무 구분 [] 약국개설자 []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 약국에 근무하는 한약사
		근무 약국 명칭
		근무 약국 주소
	의료기관 근무자	근무 의료기관 구분 []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병원 [] 치과의원 [] 한방병원 [] 한의원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조제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무 의료기관 명칭
근무 의료기관 주소		
그 밖의 기관 근무자	근무 기관 구분 [] 의약품·의약품 제조(수입)업 ([] 제조(수입)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 그 밖의 경우) [] 의약품 도매상([] 품질관리책임자 [] 그 밖의 경우)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조제업무 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준)정부기관 [] 의약품·의약품 외의 물품 관련 기업 [] 학교 [] 자영업 [] 그 밖의 기관()	
	근무지 명칭	
	근무지 주소	

연수교육 및 신고 관련	최근 신고 연도
	연수교육 이수상황 총 ()시간 이수 의무 중 ()시간 이수

「약사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한약사회장·대한한약사회장 귀하

첨부서류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수교육 이수증(면제된 사람은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연수교육 면제 확인서를 말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매 3년마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 나. 「약사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면허를 다시 받은 경우: 면허를 다시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 다. 법률 제17208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를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어두운 난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3. "상근"이란 1개의 약국에서 주 5일 동안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한약사는 "약국 근무자"란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약사·한약사는 "의료기관 근무자"란만, 그 밖의 기관에 근무하는 약사·한약사는 "그 밖의 기관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5. "근무 약국 명칭"란 및 "근무 약국 주소"란에는 상근하는 약국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되, 비상근 근무자인 경우에는 대표 약국 1개소의 명칭과 주소만 적습니다.
6. 의료기관 외부에 설치된 탕전실에서 근무하는 한약사의 경우에는 "근무 의료기관의 주소"란에 탕전실의 주소를 함께 적습니다.
7. 신고서를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8.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약사·한약사 연수교육 면제 확인서

1. 성 명:

2. 면허번호:

3. 직 종:

4. 연수교육 면제 사유: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한약사회장·대한한약사회장

직인